

시민고충처리위원회(지방옴부즈만) 고충민원 처리사례

□ 민원 제목 : 농로포장이 가능하도록 형질변경 허가 등 조치요망

□ 신청 취지

- ○○○○○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의 농지 진입로가 편입되고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○○동 산 000번지선 농지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○○○○공사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, 공사구간 끝부분에서 약 30m 정도 공사구간 외 비포장 농로에 대하여 도로공사에 포장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라 구청의 조치가 있어야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진입농로 포장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구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, 토질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,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가능한 경우가 있음
- 해당 포장요청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인 ○○동 산 000번지선 일원으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에 따라 농로, 임도, 사도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허가 득할 시 포장이 가능하나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2조 [별표2]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제1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는 수질오염, 환경오염 등이 예상 되지 않아야 하는 등 제한규정이 있어 실제 포장가능 여부는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□ 사실관계

- 공부 확인 및 2021. 5. 14. 현장 조사결과 ○○동 산 000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목이 임야이며 현재 은행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, 과거 민원인이 농로로 사용하던 진입로 대부분이 ○○○○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터널 상부를 우회하여 새로운 진입농로를 조성 중에 있음
- 현장 확인 결과 금회 농로 포장 요구 구간은 도로공사의 우회농로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농로포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산 000번지 입구까지 약 30m정도 되며 경사가 심하여 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토사 유실 등으로 농기계나 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
- 이 부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○○○○공사에 추가 포장을 요구하여 관할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오면 포장을 해주겠다고 승낙을 받았다고 하며 ○○○○공사 현장 담당과장에게도 확인하였음

□ 관계 법령 등
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

□ 판단 및 결론[권고]

-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농로가 편입되어 새로운 농로를 통한 농로 진입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임을 감안, ○○○○공사와 협의하여 농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